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및 자료보전 명령 도입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8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안 제40조의6 신설 등)	3
2. 위탁기업에 대한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40조의8 신설) ...	17
3. 양 당사자의 의한 신문 등 도입(안 제40조의9 신설)	21
※ 참고자료	27
1. 중소기업 기술침해 및 피해현황 비교	27
2. 기술유용행위 입증 등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	28
3.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정조사 개요 및 현황	2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06. 17.
3. 회부연월일 : 2025. 06. 1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위탁 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위반행위 존재여부 또는 손해액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6 신설 등).
- 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의8 신설).
- 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고,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40조의9 신설).

IV. 검토의견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안 제40조의6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조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전문가를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전문가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1.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침해행위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4.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② 법원은 기술의 난이도·복잡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에 따른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4.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당사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전문가 조사 참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영업비밀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시를 명하는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5항 후단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의 대상이 아닌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조사결과보고서상의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내용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현행	개정안
	<u>인정되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u> <u>⑨ 당사자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등사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u> <u>⑩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u> <u>⑪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u> <u>⑫ 법원은 조사의 대상·방법·범위·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u>⑬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u> <u>⑭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u>

현행	개정안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0조의7(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40조의6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배경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협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²⁾).

이 중 현행 법 제40조의5³⁾에 규정된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위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정보 열위에 있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을 상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 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안 제40조의6)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와 같이 위탁기업의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반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 문제를 해소하여 위탁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 조항을 신설(안 제40조의7)함으로써 사실조사 전문가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개정안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해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증거수집제도와 유사성을 띠고 있음. 미국은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당사자간 침해 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거개시 제도(Discovery)⁴⁾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⁵⁾.

4) 디스커버리(Discovery)는 상대방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증거공개 절차와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요구하는 증거개시(證據開示, 증거를 열어서 보임)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특히 증거개시 절차는 증언녹취, 질문서, 자백요구, 문서 등의 제출 요청, 신체 및 정신 감정 등을 통해 소송 관련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획득하는 절차를 의미함(국회입법조사처,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2023.12.).

5) 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8> 2025.5.19.)

[표 1] 미국 Discovery 및 독일 Inspection 제도 비교

구 분	미국(Discovery)	독일(Inspection)
개요	· 당사자의 청구 또는 항변에 관계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증거교환 · 분쟁 예상 시 증거보전 의무 발생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공장 등에서 증거조사 후 보고서 제출 · 법원은 제출된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 결정 - 침해입증의 이익(원고)과 비밀 보호의 이익(피고)을 비교형량
절차	· 제소 후 변론전 회합 시부터 시작되며 1~2년 소요	· 주로 소제기 전후 가처분으로 신청, 피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음 → 증거의 은폐/인멸 방지
비밀 보호	· 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 대리인에만 열람 허용	· 신청인 대리인만 조사현장 입회, 조사 보고서 초안 열람 신청 가능
불이행	· 법정모욕죄 적용, 관련주장 각하, 증거 사용금지 등 제재조치 가능	·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수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
비용	· 약 5억~50억원(50만~500만달러)	· 약 6천만~3억원(5만~25만유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민사소송법」 등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규에 증거개시 제도가 반영되어 있는 미국·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을 통해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⁶⁾되고 있는데, 이는 증거개시 제도의 특성(소송 지연 및 비용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모든 민사소송 절차에 적용하기 보다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정보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는 기술탈취 등 특수한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6) 독일·일본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증거개시 제도가 규정되어 기술분쟁(특허분쟁) 등 소송에서만 활용하고 있음.

한편,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간의 특허침해소송이 해외에서 제기되는⁷⁾ 과정에서 국가 기술보호 약화 및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부터 한국형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⁸⁾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한국형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① 제도 도입에 따라 해외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특허 소송 남발 및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기술·영업비밀이 전문가 사실조사를 통해 공개·유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② 제도 취지가 원고(권리자)측 입장에서 침해행위 증명에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고(침해자)측 입장에서 사실조사 개시요건 및 절차상 공정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⁹⁾.

특히,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민간 협

7) (예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 2019년 4월 LG화학, 미국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8) 의안번호 2203385,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4. 8. 29., 의안번호 2207728,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2025. 1. 22, 의안번호 2210890,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2025. 6. 17.

9)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절차상 공정성(fair), 문제 없나?」 (이진수 휴롬 본부장(변리사), 2024.10.10.), IPDaily(<https://www.ipdaily.co.kr/>)

회에서는 한국형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¹⁰⁾에 주로 피소되는 입장으로, 국외 NPE는 국내기업 소송을 통해 수집한 침해증거 및 영업비밀 정보를 토대로 막대한 배상액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되며, 국내기업의 기술·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핵심기술 관련 중요 정보가 해외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다만, 일반적인 특허권 침해소송과 달리,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수탁·위탁 거래계약 관계 내에서의 법 위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소송과 차이가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양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하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등 수탁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한 수탁기업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는 등 수

10)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의 직접적인 사업활동 없이 특허 소송 및 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및 개인을 지칭함.

탁기업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

한편, 동 제도 도입을 통해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소송과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법원행정처는 기술유행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¹¹⁾임.

이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조항별로 검토하였음.

나.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관련 조문별 검토

개정안 제40조의6과 제40조의7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11)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 배경이 특허권 보호를 위한 기술 중심의 분쟁사건에서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술자료 유행행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법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9,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은 동 제도의 적용 범위를 현행법 제25조제2항¹²⁾을 위반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¹³⁾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체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수탁·위탁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탁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이에 따른 손해입증의 부담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3)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에 대한 강제 구매,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대한 불이익, 부당한 경영상의 정보 요구, 부당한 거래단절 행위 등

을 완화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증거 수집과 입증이 어려운 기술 관련 분쟁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거래 단절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우선 도입한 이후 제도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 제40조의6제1항은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가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및 변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직권에 따라 전문가 사실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¹⁴⁾

14)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조사 개시의 요건으로 권리자의 신청만을 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203385) 검토보고서(2024.11.)

셋째, 전문가 사실조사 대상에 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서 등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9,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은 ‘상대방 당사자와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법률 자문 또는 소송의 준비·수행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공개 정보 또는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동 개정안은 조사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사실조사(Discovery) 제도를 운영중인 미국은 조사대상에서 법률자문서를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 간의 의사소통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사자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법률자문서가 공개되어 소송 대응전략이 상대방에게 노출된다면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소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임.

넷째, 안 제40조의6제13항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법」의 증거보전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¹⁵⁾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후에 실시될 수 있음.

이는 위탁기업의 자료 은폐·폐기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사라지거나 증인 등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증거를 미리 조사하는 증거보전 절차에 전문가를 통한 사실조사를 활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증거수집과 피해사실 입증, 피해액 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다만, 이에 대하여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¹⁶⁾될 수 있고, 개정안 제40조의8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보전 절차에 대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활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5)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16) 개정안과 동일하게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활용하려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0,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특허청은 소제기 전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전문가 사실제도가 남용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2. 위탁기업에 대한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40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8(자료보전 명령 및 그 효과)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3.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

현 행	개 정 안
	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 관리 또는 보관하는 사람이 제1항의 자료 보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상대방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보존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전 자료보존명령이 있는 후에도 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자료보존명령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자료보존명령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¹⁷⁾는 동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경우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면서 실제 보유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훼손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 규정을 신설(안 제40조의8)하여 소 제기 전·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모하고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 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첫째, 개정안은 법원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보전 명령에 따라 증거소지자가 보유한 증거는 그 변경이 금지되므로, 법원의 명령 이후 자료를 점유·관리·보유한 사람의 자료사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기간의 연장 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둘째, 안 제40조의8제6항은 ‘상대방 당사자’는 일정한 사유¹⁸⁾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40조의8제1항에서 자료보전 명령이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에게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 당사자’를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8)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양 당사자의 의한 신문 등 도입(안 제40조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9(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현행	개정안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절차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상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인 또는 당사자를 괴롭히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현행	개정안
	⑦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⑨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의 규정을,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현 행	개 정 안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① 제4항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40조의9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안 제40조의9)하면서, 그 요건과 법원사무관등의 녹음·녹화, 신문 절차 방해시 제재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기업의 구제를 위해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제25조의2), 분쟁의 조정(제28조),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손해액의 인정(제40조의3),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제40조의4),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40조의5)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피해 수탁기업에 대한 구제 제도는 결국 위탁기업이 보유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 및 손해액 산정자료가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는 이상,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은 법정의 당사자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쟁 초기에 풍부하고 정확한 증거수집을 가능하게 하여, 법원의 심리부담 경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원의 소송 절차와 별도로 피해사실의 입증과 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법을 개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면서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이의의 요지를 진술절차요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안 제40조의9제6항),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안 제40조의9제1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전문가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가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안 제40조의7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사무관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제50조¹⁹⁾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제척·기피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19) 「민사소송법」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중소기업 기술침해 및 피해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18년 이후 최근 5년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발생 건수는 총 220건, 피해금액은 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 출처 :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 '22년의 경우 기술침해가 발생하였거나 기술피해를 인지한 건수도 18건, 피해금액은 197억원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건수	75	39	55	33	18	220
총 피해액	1,162	163.2	290	189.4	197	2,001.6

- 행정조사, 조정 등을 통하여 기술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원의 정식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최종 패소하거나 중도 취하하는 피해기업 비율이 약 67%

- '23년 조사결과 기술침해 이후 법적 대응 조치 시 어려움에 대해 '기술침해 근거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100.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긴 시간 및 높은 비용(66.7%)' 및 법률적 지식 부족(33.3%) 등의 순으로 응답

< 법적 대응 조치 시 어려움, (복수응답) >

구분	기술침해 근거자료 수집의 어려움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	법률적 지식 부족	손해액 산정 어려움
피해기업	100%	66.7%	33.3%	33.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증거부족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에스제이이노테크)

- (분쟁개요) 한화와 태양광 발전에 필수 부품인 태양전지 웨이퍼의 메탈리제이션(Metallization) 장치에 관한 기술 탈취에 관한 분쟁
- (분쟁결과) 기술유용(하도급법) 관련 100억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2심(1심 패소)은 실손해 5억에 징벌배수 2배를 산정하여 10억 판결
 - 공정위가 범위반행위로 판단한 조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1심에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등 기업의 애로발생

소송 관련 기업 애로사항

- "(민사소송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유출할 수 없다'고 말해 자료를 받지 못했다" (세계일보, '23.6.19)
- "2019년 10월 공정위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다." (내일신문, '23.6.5)

□ 기술탈취 피해발생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

※ 출처 : '21-'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 ('20) 기술탈취 피해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 50%, 시간·법적 비용 부담 38.9%로 응답

*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50%) - 시간·법적비용 부담(38.9%) - 거래단절 우려(5.6%) 등

- ('21) 국내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시간과 법적 비용 부담(50%)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20, 특허청)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 개요

- (목적)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접수 시 중기부가 사실조사, 시정권고·명령, 공표 등의 행정조치('18.12~)

*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교육명령(제28조의2), 벌점부과(제27조제7항)의 추가조치 가능

<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행정조사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정조사(기술보호법)	기술자료 유용행위 행정조사(상생협력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	▷ 상생협력법 제40조 제1항

□ 주요 성과

- (행정처분) '의료기기장비'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증거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거쳐 혐의를 입증하여 제1호 시정권고 처분

* (조치경과) 신고접수('21) → 당사자조사(10회) → 침해검토('23.3) → 시정권고 처분('23.4)

- (상생의 분쟁해결) 행정조사 중 당사자간 조정의사를 확인하여 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이후 상생협력기금 공동 출연

* (경과) 행정조사 개시('23.2) 및 조정유도 → 조정개시('23.3) → 1·2차 조정회의('23.4~6) → 최종합의('23.7.17) → 상생협력기금(3억 원) 공동출연('23.7.28)

<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조정 사례('23.하반기) >

알고케어(스) ↔ 롯데헬스케어(대), 행정조사 신청('23.2월) → 조정합의('23.7월)		
		· (분쟁내용) 롯데측이 투자 및 사업협력 제안 후 유사제품을 자체개발하며 기술탈취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필키)	· (합의내용) 사업철수, 소모적 비방금지, 상생협력등을 내용으로 최종합의

□ 기술침해 행정조사현황 ('18.12~'25.3.)

○ (총괄) 접수 105건, 종결 91건, 진행 14건(개시 0건, 중지 3건, 검토 11건)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진 행	요건검토	-	-	-	-	-	-	7	4	11
	조사개시	-	-	-	-	-	-	-	-	0
	조사중지	-	-	-	-	-	-	3	-	3
	소계	-	-	-	-	-	-	10	4	14
종 료	시정권고	-	-	1	1	-	-	1		3
	조정성립*	-	2	1	7	-	4	-		14
	조사불개시	2	4	5	1	2	1	3		18
	기타**	-	8	9	8	12	12	6	1	56
	소계	2	14	16	17	14	17	10	1	91
합계		2	14	16	17	14	17	20	5	105

* 공정거래조정원 연계 1건, 중기부·동반위 주관 자율조정 1건 포함

** 조사중지 6개월 경과에 따른 조사종결 (17건), 신고인 취하 등 (39건)